

「직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2. 14. 개정 판 (시행 2022. 2. 1.) → 2023. 2. 13. 개정 판 (시행 2023. 1. 1.)

바뀜 17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68/compare?from=1251&to=141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8:55:5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 <개정 2022-02-14> 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 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 3. 대학 : 신학대학, 인문사회대학, 보건복지대학, 과학기술대학, 미래융합대학, 문화예술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, 스미스학부대학 4. 행정본부 :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대외협력처, 연구산학처, 총장특보(비서실), 내부감사실, 재무실, 입학처 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, 박물관, 출판부, 대학언론사, 인성교육수련원, 공통기기실험실, <u>그린교육장</u>, 실험동물연구센터, 에코팜센터, <u>임송실습교육장</u> 7. 부속교육기관 : 국제교육원, 평생교육원,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, 보육교사교육원, 유치원/어린이집, 생활교육원 8. 부설연구기관 : 융합연구센터, 부설연구소, 자율연구소, 북아태지회연구소, 정책연구소 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. <삭제 2022-02-14> 11. 교육혁신원 12. 글로벌사회혁신원 13. <삭제 2022-02-14> 14. 학술정보원 15. 캠퍼스사업단 16. 예비군대대 17. 학교기업 18. <u>재정지원사업단: 국책사업추진기획단, 수익사업단</u> 19. <삭제 2022-02-14>	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 <개정 2022-02-14> 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 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 3. 대학 : 신학대학, 인문사회대학, 보건복지대학, 과학기술대학, 미래융합대학, 문화예술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, 스미스학부대학 4. 행정본부 :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<u>대외국제</u>처, 연구산학처, 총장특보(비서실), 내부감사실, 재무처, 입학처 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, 박물관, 대학언론사, 인성교육수련원, 공통기기실험실, 실험동물연구센터, <u>SU-FARM</u> 7. 부속교육기관 : 국제교육원, 평생교육원,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, 보육교사교육원, 유치원/어린이집, 생활교육원 8. 부설연구기관 : 융합연구센터, 부설연구소, 자율연구소, 북아태지회연구소, 정책연구소 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. <삭제 2022-02-14> 11. 교육혁신원 12. 글로벌사회혁신원 13. <삭제 2022-02-14> 14. 학술정보원 15. 캠퍼스사업단 16. 예비군대대 17. 학교기업 18. <삭제 2023-02-13> 19. <삭제 2022-02-14> 20. <u>대학일자리본부</u> 21. <u>SU인권센터</u> 22. <u>S/W융합교육원</u> 23. <u>미래전략사업본부</u>
제11조(스미스학부대학)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,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팀, <u>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</u>, <u>기초학문학부</u>, <u>창의융복합학문학부</u>, <u>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</u>, 교직과를 둔다.	제11조(스미스학부대학)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,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<u>교학지원팀</u>, <u>기초교양부</u>, <u>핵심교양부</u>, <u>융합교양부</u>, 교직과정을 둔다.<개정 2023-02-13> ③ <삭제>

현행	개정안
③ <삭제>	
제16조(사무처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, 시설관리팀, 건축·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총무인사팀(총무, 인사, <u>구매</u> , 경비, 수송, <u>주차정산소</u>)을 둔다. 2. 시설관리팀(관재, 영선, 전기통신, 기관, 조경, 미화)을 둔다. 3. 건축·안전관리팀(건축, 안전관리)을 둔다.	제16조(사무처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, 시설관리팀, 건축·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-02-13> 1. 총무인사팀(총무, 인사, 경비, 수송)을 둔다. 2. 시설관리팀(관재, 기관, 조경, 미화, 교육미디어지원)을 둔다. 3. 건축·안전관리팀(건축, 안전관리, 영선, 전기/통신)을 둔다.
제17조(대외협력처)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,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.	제17조(대외국제처)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, 발전기금 모금, 홍보 업무 및 <u>국제교육원</u>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과 <u>커뮤니케이션팀</u> 을 둔다.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<u>산하 한국어학당(센터)</u> , <u>글로벌교류</u> , <u>글로벌학생지원</u> 을 둔다. <전면개정 2023-02-13>
제19조(재무실) ① 재무실에 재무실장을 두며 재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재무실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.	제19조(재무처)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.
제19조의2(입학처)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<u>연구산학처</u> 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. <신설 2022-02-14>	제19조의2(입학처)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입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. <개정 2023-02-13> <신설 2022-02-14>
제23조(생활건강증진원)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, 건강증진센터, <u>BLS센터</u> , <u>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</u> 을 둔다.	제23조(생활건강증진원)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, 건강증진센터, <u>시뮬레이션센터</u> 를 둔다. <개정 2023-02-13>
제28조의2(그린교육장) 그린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.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2(SU-FARM) <u>SU-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, 에코팜센터, 대학실습교육장</u> 을 둔다. <신설 2022-02-14> <전면개정 2023-02-13>
제28조의3(실험동물연구센터) <u>실험동물연구센터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을 둔다.</u>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3

현행	개정안
제28조의4(에코팜센터) <u>에코팜센터에 담당자를 둔다.</u>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4
제28조의5(임송실습교육장) <u>임송실습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.</u>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5
제29조(국제교육원)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,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, 국제학생지원센터,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, 한국어교육센터, 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를 둔다.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.	제29조
제37조(SU인권센터)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실, 양성평등상담실을 둔다. 각 실마다 실장을 둔다. <전면개정 2022-02-14>	제37조(SU인권센터)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팀, 양성평등상담팀을 둔다. 각 팀마다 팀장을 둔다. <개정 2023-02-13> <전면개정 2022-02-14>
제44조(재정지원사업단) ① 재정지원사업단에 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, 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재정지원사업단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단 국책사업추진기획팀, 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을 둔다.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. <전면개정 2022-02-14>	제44조(미래전략사업본부)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,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, 지능형반도체사업단, 수익사업단을 두며, 각 단/본부마다 단/본부장을 둘 수 있다. 1.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. 2.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. 3.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. <전면개정 2023-02-13>
제45조	제45조(S/W융합교육원) ① S/W융합교육원에 S/W융합교육원장을 두며, S/W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/W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 ② S/W융합교육원에 내에 S/W융합교육센터, S/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, S/W중심대학사업단, S/W봉사단을 두며,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.
제48조(직명) ①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. ② 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으로 구분한다.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.	제48조(직명) ①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. ② 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3-02-13>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.

현행	개정안
제50조(보직) ①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단,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⑤ <삭제>	제50조(보직) ①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단,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23-02-13> ③ 부처장, 실장,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, 센터장,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,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-02-13>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-02-13> ⑤ <삭제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
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
3. 대학 : 신학대학, 인문사회대학, 보건복지대학, 과학기술대학, 미래융합대학, 문화예술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, 스미스학부대학
4. 행정본부 :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대외국제처, 연구산학처, 총장특보(비서실), 내부감사실, 재무처, 입학처
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
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, 박물관, 대학언론사, 인성교육수련원, 공통기기실험실, 실험동물연구센터, SU-FARM
7. 부속교육기관 : 국제교육원, 평생교육원,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, 보육교사교육원, 유치원/어린이집, 생활교육원
8. 부설연구기관 : 융합연구센터, 부설연구소, 자율연구소, 북아태지회연구소, 정책연구소
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
- 10.
11. 교육혁신원
12. 글로벌사회혁신원
- 13.
14. 학술정보원
15. 캠퍼스사업단
16. 예비군대대
17. 학교기업
- 18.
- 19.
20. 대학일자리본부
21. SU인권센터
22. S/W융합교육원
23. 미래전략사업본부

제11조제2항 중 "교학팀,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, 기초학문학부, 창의융복합학문학부,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, 교직과

를 둔다."를 "교학지원팀, 기초교양부, 핵심교양부, 융합교양부, 교직과정을 둔다.〈개정 2023-02-13〉"로 한다.

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, 시설관리팀, 건축·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무인사팀(총무, 인사, 경비, 수송)을 둔다.
2. 시설관리팀(관재, 기관, 조경, 미화, 교육미디어지원)을 둔다.
3. 건축·안전관리팀(건축, 안전관리, 영선, 전기/통신)을 둔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대외국제처)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, 발전기금 모금,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

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.

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(센터), 글로벌교류, 글로벌학생지원을 둔다.

제19조의 제목 "재무실"을 "재무처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"재무실"을 각각 "재무처"로 한다.

제19조의2제2항 중 "연구산학처"를 "입학처"로 하고, "둔다."를 "둔다. 〈개정 2023-02-13〉"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BLS센터,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."를 "시뮬레이션센터를 둔다."로 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의2(SU-FARM) SU-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, 에코팜센터, 대학실습교육장을 둔다.

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의3

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의4

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의5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

제37조제2항 중 "인권상담실, 양성평등상담실을"을 "인권상담팀, 양성평등상담팀을"로 하고, "실마다 실장을 둔다."를 "팀마다 팀장을 둔다. 〈개정 2023-02-13〉"로 한다.

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4조(미래전략사업본부)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,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, 지능형반도체사업단, 수익사업단을 두며, 각 단/본부마다 단/본부장을 둘 수 있다.

1.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.
2.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.
3.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.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5조(S/W융합교육원) ① S/W융합교육원에 S/W융합교육원장을 두며, S/W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/W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S/W융합교육원에 내에 S/W융합교육센터, S/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, S/W중심대학사업단, S/W봉사단을 두

며,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제48조제2항 중 "기술직, 기능직으로 구분한다."를 "기술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3-02-13>"로 한다.

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0조(보직) ①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

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단,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부처장, 실장,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, 센터장,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,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.

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⑤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